

## 제 17 장 노동

### 제 17.1 조 일반원칙

1. 각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(1998년)(이하 “국제노동기구선언”이라 한다)에 따른 약속을 확인한다.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에서 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대로 다음의 기본 원칙 및 권리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

- 가.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
- 나.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
- 다.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, 그리고
- 라.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

2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의 정책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, 그러한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국의 노동 법, 규정 및 관행을 채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.

3.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,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, 다음을 포함하는 자국의 노동 법 및 규정을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가. 제1항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 및 규정, 그리고
- 나. 자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문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노동법 및 규정

각 당사국은 자국 노동법의 집행에서의 조사, 기소, 규제 및 준수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고, 집행에 대한 자원 배분에 관하여 선의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유한다.

4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의 장려를 위하여, 또는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의 설립, 인수, 확장 또는 유지의 장려를 위하여, 제1항에 언급된 기본 원칙 및 권리의 준수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자국의 노동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,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.

5. 각 당사국은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의 노동 법, 규정, 관행 또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.

## 제 17.2 조 절차적 보장

제19장(특명성)에서 발생하는 이 장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제17.4조에 따른다.

## 제 17.3 조 제도적 장치

### 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동 사안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한다. 이 항의 목적상, 달리 통보되지 아니하는 한,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.

가. 한국의 경우, 고용노동부 또는 그 승계기관

나. 호주의 경우, 고용부 또는 그 승계기관

### 임시 위원회

2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,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. 임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노동부 및/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관과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.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안을 논의한다.<sup>87</sup>

## 제 17.4 조 협의

1.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.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, 그리고 당사국이 그 사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7.3조제2항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그러한 임시 위원회의 설치가 이 항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, 그 임시 위원회는 과도한 지체없이 설치되고 그 사안의 해결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.

---

<sup>87</sup> 편리한 경우,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국제노동기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국제 기구의 회의에서 회합할 수 있다.

## 제 17.5 조 협력

1.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.
2. 협력 분야는 노사관계, 근로조건,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,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과 노동통계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.
3. 협력 활동은, 각 당사국의 이용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, 사람과 정보의 교환,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<sup>88</sup>·학회 및 세미나에서의 협력, 공동연구 또는 합작 사업의 개발과,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노동기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노동기구 내에서의 기술협력의 자금조달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.

## 제 17.6 조 분쟁해결

어떠한 당사국도, 제17.2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안을 포함하여,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

---

<sup>88</sup>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은 아시아태평양지역정부그룹(Asia-Pacific Government Group) 및 선진국그룹(Industrialised Market Economies Group)과 같은 국제노동기구 정부그룹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sia-Pacific Economic Cooperation)를 포함한다.